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26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문대림・주철현・안도걸

이원택・송옥주・윤준병

김영호 • 전종덕 • 서삼석

이상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질서위 반행위규제법」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,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 은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, 과태료 재판,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 려는 것임(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31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	<u>&lt;삭 제&gt;</u>
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	
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	
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	
<u>기할 수 있다.</u>	
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	<u>&lt;</u> 삭 제>
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	
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	
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	
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	
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	
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	
재판을 한다.	
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	<u>&lt;삭 제&gt;</u>
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	
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	
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	